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25
----------	-------

발의연월일 : 2026. 6. 30.

발 의 자 : 조정훈 · 서천호 · 최수진
박충권 · 윤용근 · 권영세
주호영 · 김용태 · 김대식
임종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와 같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압류명령의 취소를 받아 손해배상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교정시설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압류명령 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실현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적인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병원비·약제비 등 건강을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압류명령 취소를 못하도록 그 요건과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6조제4항).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1. 압류채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인 경우
2. 압류된 채권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수용시설의 장이 보관하고 있는 금전에 대한 채권인 경우. 다만, 보관금 중 병원비·약제비 등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분은 제외한다.
3. 압류채권자가 압류채무자의 범죄행위(미결수용자인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말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 ③ (생략) <u><신설></u></p>	<p>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압류채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인 경우</u> <u>2. 압류된 채권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수용시설의 장이 보관하고 있는 금전에 대한 채권인 경우. 다만, 보관금 중 병원비·약제비 등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분은 제외한다.</u> <u>3. 압류채권자가 압류채무자의 범죄행위(미결수용자인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말한다)에</u>

<p>④ (생략)</p>	<p><u>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집행 채권으로 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	---